

은행 및 신용조합 계좌 개설을 위한 체크리스트

당좌계좌 및 저축계좌가 적합한 상품이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신용조합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은행이나 신용조합에서 계좌 개설하기

우선, 믿을 만한 지인이나 가족에게 은행 또는 신용조합을 추천받으세요. 그리고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수수료
- 온라인 청구서 납부 또는 모바일 앱 등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 저축계좌 이자율

일반적으로 저축계좌 또는 당좌계좌를 개설하려면 25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의 최초 입금액이 필요합니다.

도움말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줄이기 위해 계좌에 항상 유지해야 하는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이를 “최소 잔액 요건(minimum balance requirement)”이라고 합니다. 계좌 개설 시 필요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 또는 신용조합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개인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식별번호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 (SSN),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 여권번호 및 발행 국가, 외국인 신분증 번호 또는 기타 정부에서 발급한 식별 번호를 말합니다.

- 많은 은행에서는 운전면허증, 미국 여권, 또는 군인 신분증과 같이 사진이 부착된 미국 또는 주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 일부 은행 또는 신용조합의 경우에는 미국 또는 주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없다면 외국 여권, 또는 미트리쿨라 영사 카드 (Matricula Consular Card) 와 같은 영사관 ID를 받아주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카드
-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청구서
- 출생증명서

미트리쿨라 영사 카드 또는 영사관 ID

미트리쿨라 영사 카드는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정부 신분증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영사관 ID(CID)라고 하는 유사한 신분증을 제공합니다. 미국에 있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이나 주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없다면 해당 국가의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은행이나 신용조합에서 이 신분증을 받아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TIN과 이자가 붙는 계좌

일부 계좌는 잔액에 대한 이자가 생깁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이자는 과세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붙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나 ITIN이 필요합니다.

ITIN 및 취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800-829-1040로 전화하여 국세청(IRS)에 문의하거나 irs.gov/Individuals/General-ITIN-Information (여러 언어로 제공됨)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당좌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은행 또는 신용조합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당좌계좌 개설을 위한 체크리스트

은행이나 신용조합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다음은 많은 은행 또는 신용조합에서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당좌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필요한 정보	추가 질문
☐ 사진이 부착된 미국정부, 주정부 또는 외국정부(각 은행 또는 신용조합에서 허용하는 외국 신분증에 대한 자체정책이 있음)에서 발급한 신분증	
☐ 추가 신분 증명이 가능한 서류: 사회보장카드,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청구서 또는 출생증명서	
☐ 사회보장번호 또는 ITIN. 만약 이 정보가 없다면 이자가 붙지 않는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 계좌 개설에 필요한 돈	

은행이나 신용조합에 해야 하는 질문

정보를 찾아보거나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하는 항목	메모
☐ 매월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잔액	
☐ 월 유지 수수료 또는 서비스 수수료	
☐ 자동이체 및 월 수수료 면제 여부	
☐ 수표당 또는 거래 수수료	
☐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s) 사용 수수료	
☐ 온라인과 모바일 뱅킹을 통한 계좌 이용 및 관련 비용	
☐ 온라인과 모바일 뱅킹을 통한 청구서와 기타 비용 납부 및 관련 비용	
☐ 초과 인출 또는 잔액 부족 수수료 및 서비스 중지 방법	
☐ 낮은 잔액 경고 알림	

기관 소개

소비자금융보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은 효과적인 규범을 만들고 이를 일관되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생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줌으로써 소비자 금융 시장을 보호하는 21세기 기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sumerfinance.gov 에서 알아보세요.

기관 관련 링크



민원 접수하기

consumerfinance.gov/complaint



사례 공유하기

consumerfinance.gov/your-story



금융 관련 자료 찾아보기

consumerfinance.gov/askcfpb



의견 나누기

facebook.com/cfpb

twitter.com/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